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7.

발 의 자 : 강준현 · 김승원 · 김현정
박상혁 · 송옥주 · 윤준병
이강일 · 이소영 · 전용기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「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·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, 국가를 위해 전몰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,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제4호)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전몰군경자녀수당

제16조의3의 제목 “(6·25전몰군경자녀수당)”을 “(전몰군경자녀수당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”을 “전몰군경”으로,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당”을 “전몰군경자녀수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전단·제2호·제3호 전단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당”을 각각 “전몰군경자녀수당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7항제4호 전단 중 “6·25전몰군경자녀수당”을 “전몰군경자녀수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몰군경자녀수당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②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하였던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적용하되, 이 법 시행일부터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·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·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·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

-----전몰군경
자녀수당-----

-. -----

-----.

2. -----

-----전몰
군경자녀수당-----

-. -----

3. -----
-----전몰군
경자녀수당-----

-----.

-----.

② -----
--전몰군경자녀수당-----

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

③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, 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 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제16조의3제1항의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.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⑧ (생 략)

-----.

③ 전몰군경자녀수당-----

-----.

제42조(진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전몰군경자녀수당-----

---. -----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